#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10286

제안연월일: 2025. 4.

제 안 자: 국토교통위원장

#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 명	의안번호	발의자	회부일	회의정보	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	2207920	염태영의원 등 15인	'25.2.7.	상정	제42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'25.03.13.)
				소위 심사	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'25.04.16.)
	2208762	윤준병의원 등 14인	'25.3.11.	상정	제42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'25.03.13.)
				소위 심사	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'25.04.16.)
	2208830	박용갑의원 등 13인	'25.3.12.	상정	제42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('25.03.13.)
				소위 심사	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'25.04.16.)
	2209132	황정아의원 등 10인	'25.3.20.	소위 심사	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'25.04.16.)
	2209549	권향엽의원 등 16인	'25.4.3.	소위 심사	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'25.04.16.)
	2209590	윤종오의원 등 19인	'25.4.7.	소위 심사	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'25.04.16.)
	2209600	황운하의원 등 12인	'25.4.7.	소위 심사	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'25.04.16.)
	2209632	문진석의원 등 10인	'25.4.8.	소위 심사	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'25.04.16.)
	2209658	구자근의원 등 10인	'25.4.9.	소위 심사	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'25.04.16.)

제424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(2025. 4. 23.)는 위 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「국회법」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#### 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의 유효기간 만료가 2025년 5월 31일로 예정되어 있고, 유효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현행법이 계속 적용됨.

그러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건수는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, 새로운 피해사례가 확인되는 등 전세사기 피해가 아직 계속되고 있어 신청 접수를 중단하더라도 심각한 부작용이 없을 정도로 피해자 구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.

이에, 잠재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이 현행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추가로 연장하되,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제정된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법의 유효기간인 2025년 5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 함(법률 제19425호 부칙제2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"2년"을 "4년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범위에 관한 특례) 이 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	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		
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	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		
부칙	부칙		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시행	제2조(유효기간)		
후 <u>2년</u> 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	- <u>4년</u>		
력을 가진다.			